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69,599,805	38,087,994
일반회계	995,676,429	29,870,293
특별회계	273,923,376	8,217,701
공기업특별회계	189,553,384	5,686,60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4,602,906	1,938,08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122,305	1,623,66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0,828,173	2,124,845
기타특별회계	84,369,992	2,531,100
주택사업특별회계	3,421,363	102,641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615,672	138,47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443,218	43,297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20,073	3,602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924,384	57,732
교통사업특별회계	9,733,092	291,99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4,222,718	1,326,682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8,889,472	566,68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21,61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 된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 한다.